

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...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‘환경보건법 시행령’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※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「환경보건법」 개정안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('23.8.16 공포, '24.2.17 시행)

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*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,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* 「환경보건법」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(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) 위반 용품, 제24조제10항(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) 위반 용품

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,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.

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,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붙임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혜린 (044-201-6754)

현행	개정안
제16조의2(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·수선의 규모)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	제16조의2(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·수선의 규모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(도료, <u>마감재료</u> 또는 <u>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</u> 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한 때	2. ----- ----- <u>마감재료,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</u> 또는 <u>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</u> ----- -----
제19조의2(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)	제19조의2(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)
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(이하 <u>이 조</u> 에서 “환경유해인자”라 한다)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조 및 제19조의3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3(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

보고 등)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(이하 “관련 사업자”라 한다)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

2. 위반사항

3. 조치 방법 및 기간
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

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
2.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 사실에 관한 사항
2.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

제19조의3 (생략)

제22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① 삭제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에 관한 사항

4.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

5.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

제19조의4 (현행 제19조의3과 같음)

제22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

2의3.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

2의4.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

2의5.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

3. (생 략) 4. <u>법 제33조제2항제2호(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u> ③ ~ ⑧ (생 략)	<u>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</u>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(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u>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-